【사건번호 2017-006】 한국고용정보원 발간물 제공거부 사건

1. 개요

o 피신청인 : 한국고용정보원

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

- 대학전공별 진로가이드

o 데이터 신청 목적

- 출판 및 전자책 제작

o 제공거부사유

- 보고서에 포함된 인터뷰 대상자들에 관한 권리(초상권, 저작권)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제공거부

2. 당사자 주장

가. 신청인

o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경우에도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, 제3자의 권리침해 우려만으로 제공을 거부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

o 실제로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거부한 것인지 알고자 함

나. 피신청인

o 이 사건 공공데이터에는 공공기관 아닌 제3자의 권리(초상권 및 저작권)가 포함되어 있으며, 이들의 허락이 없는 한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제공거부함

3. 사실조사

가. 이 사건 데이터의 생성 및 관리 현황

o 이 사건 데이터는 “대학 전공별 진로가이드”이라는 발간물로, 직업리스트 통합표, 전공소개(Part 1), 주요직업(Part 2), 융합직업(Part 3), 대학원정보(Part 4)로 구성되어 있으며, 한국고용정보원 소속의 연구진 및 외부 저자들로 구성된 집필진에 의해 작성됨

o 이 사건 데이터는 PDF 형식의 파일로 **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업로드** 되어 있으며, **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책자로도 발간되어 전국 교육청, 대학, 고용노동부, 청년희망재단 등에 무료배포하고 있음**

- 이 사건 데이터 PDF 파일에 **공공누리 2유형 마크(출처표시, 상업용 이용금지)**가 부착하여, ‘이용자가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할 때에는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며,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’는 취지를 표시함

나. 이 사건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

o “공공데이터”는 “데이터베이스,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”로서(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),

- 이 사건 데이터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주요업무인 진로지도 및 직업정보 제공을 위해 생성·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, PDF형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

다. 이 사건 데이터의 권리 관계

o 공공기관은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,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므로(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)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

o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사건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○○대학교 산학협력단 등과 일반기술(연구)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계약서 중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보면,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,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함

4. 조정 내용

가. 조정 결정 사항

o 이 사건 데이터에는 저작권 등 제3자(○○대학교 산학협력단 등)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, 출판 및 전자책 발간 등 상업적 이용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,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공이 불가함

나. 조정 결정 이유

o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나,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예외임(제17조제1항제2호)

- 해당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체결된 용역계약서를 검토한 결과, 발주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 외에도 ○○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의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음
-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이 제출한 “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여부 확인서”를 검토한 결과, 공동저작권자인 ○○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은 해당 데이터를 제3자가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음을 확인함
- 이에 따라 이 사건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

5. 분쟁조정결과

o 위와 같은 조정안을 양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성립으로 사건 종료됨